의안번호	제 728 호				
의 결	2017년 월 일				
연 월 일	(제 회)				

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정 영 수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7년 10월 31일

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 (정영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8

발의연월일: 2017년 10월 31일

발 의 자: 정영수, 이종욱, 김학철

이숙애, 임헌경, 윤홍창,

임병운 의원

1. 제정이유

이 조례는 충북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 사용된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나.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(안 제4조)
- 다.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건(안 제5조)
- 라.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 · 감독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: 붙임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과학국제문화과 문화예술담당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충북도의회 공고 제 2017-62호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장애인"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
 - 2. "평생교육"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 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 - 3. "장애인 평생교육 시설"이란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,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제3조(지원) 충청북도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문자해득교육사업
 - 2. 학력보완교육사업
 - 3.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4조(지원조건)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 제3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
 - 2.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장애인 평생교육 학생 수 15명 이상
 - 3.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

제5조(지도·감독) 충청북도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교부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, 사업에 대한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 령

□ 평생교육법

- 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)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시· 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 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31조(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)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 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설비를 갖추어 교육감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 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,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.3.27.〉
 -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 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교원의 복무·국내연수와 재교육 에 관하여는 국·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④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·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.3.23.〉
 -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·절차, 입학자격,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·

절차,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15.3.27.〉

-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.3.27.〉
-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, 회계 및 교원 등의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「사립학교법」 제28조,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,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. 다만,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・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처리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5.3.27.〉

□ 초・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- 1. 초등학교 · 공민학교
- 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- 3. 고등학교 · 고등기술학교
- 4. 특수학교
- 5. 각종학교

□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제4조(보조대상 사업) 교육감은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
- 2.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- 3.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,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 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5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.
 - ③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교육부장 관(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)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.
 -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충청 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세부지원 기준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 운영 지원 필요

3. 관련조문

- 제3조(지원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문자해득교육사업
 - 2. 학력보완교육사업
 - 3.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4조(지원조건)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제3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한 경우
 - 2.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장애인 평생교육 학생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
 - 3.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: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2기관 운영

나. 추계 결과

(단위: 천원)

연간 운영비 추계			연도별 운영비 추계					
산출기초	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합계	
1. 장애인평생교육시설		97,380	97,380	97,380	97,380	97,380	486,900	
가. 다사리학교 60,000,000원×1기관=	60,000	60,000	60,000	60,000	60,000	60,000	300,000	
나. 평생열린학교 37,380,000원×1기관=	37,380	37,380	37,380	37,380	37,380	37,380	186,900	

다. 재원조달방안: 보통교부금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: 교육국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